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83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1. 19.
3. 회 부 일 : 2025. 1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동·보관·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심 내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보행로·횡단보도 입구·공원 진입부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방치는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원 증가와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신속한 강제 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단방치 금지 대상을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하는 “자전거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통행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20조 및 제25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 제20조에 따른 “무단방치 금지” 대상을 현행 “자전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는 개념인 “자전거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5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u>자전거</u> 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자전거등의 무단방치 금지) ① ----- ----- <u>자전거등</u> -----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u>자전거</u> 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 ----- ----- <u>자전거등</u> ----- ----- ----- -----.
제25조(과태료) ① (생략) <u><신설></u>	제2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등을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¹⁾ 전동킥보드, 전동보드, 외발형 전동휠, 양발형 전동휠(세그웨이) 등 1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함.

현행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제는 주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음.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령 체계²⁾]

구분	법령 정비의 목적	PM 관련 법령
정의	전기적 장치로 PM의 정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교통수단의 종류 구분 정의	도로교통법
이용자(운전자) 의무	PM을 운행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할 의무와 통행방법 규정	도로교통법
운행할 수 있는 도로 (교통시설 규정)	PM 운행이 가능한 구간 또는 통행금지구간 설정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교통·사회적 목적의 활용	교통수요 관리 및 도시교통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수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단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주차 및 보관 시설	PM에 대한 주차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도 규정 없음 (ex. 일반적 자동차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교통서비스 및 상업목적의 활용	PM의 대여 등 상업적 활용을 위한 절차와 사업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별도 규정 없음 (ex. 자동차 대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PM 대응 보행자 안전대책	PM이 운행되는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에 대한 별도 대책 정비	별도 규정 없음 (ex. 일반적인 보행자 안전은 「보행안전법」)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도로 및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의무, 연령 및 운전면허 요건,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 승차정원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과 안전모 착용, 보도·2인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의무 및 위반 시 제재방안 등을 규율하고,³⁾

2) 김용수·박준환,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에 도움인가? 위협인가?」, NARS 현안분석 363호, 국회 입법조사처, 2025.9.18.

「자전거법」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관리,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구간 설정⁴⁾ 등을 규정하여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가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부근 등에서 정차 또는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⁵⁾ 위반시 이동을 명령하거나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으로 하여금 이동·보관·매각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⁶⁾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⁷⁾

3)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80조(운전면허), 제156조(벌칙) 등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5)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6)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한편, 「자전거법」 및 동법 시행령은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위반 자전거에 대한 이동·보관·매각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⁸⁾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이동·보관 후 공고 절차를 거쳐 매각·기증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이하 생략)

7)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를 위반하여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 횡단보도·버스정류장 인근 등에서 정차·주차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2만원의 범칙금이 통고되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추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량 및 제조회사명

이에 따르면, 현행법상 “무단방치”는 일정 기간 이상 공공장소에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기간의 불법 주·정차 행위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해됨.

그런데 현행 법령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나 무단방치에 대한 단속이 인력·예산 등을 이유로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위반시 제재는 범칙금 2만원에 불과하여 제재수준이 낮아,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나 무단방치에 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10) 11)}

이에 개정안은 「자전거법」 상 무단방치 금지 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현행 법체계에서 충분히 규율되지 못하였던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권 보호와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에 관하여 「자전거법」에서 규정하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나. 기준,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10) 조선일보, “보행자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차…범칙금 ‘2만원’에 단속도 미흡”, 2023.7.6.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5/29/VWU6KZYU3FDQ7OMOODZXCH75VE, 2026.01.26. 최종확인.

한겨레, “‘신고방’ 열고 ‘공유 킥보드’ 손놓은 지자체…시민들 ‘우리가 알바냐’”, 2024.9.11.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57967.html>, 2026.01.26. 최종확인.

11)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분석 결과,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27,423건에 달하며, ▲불법 방치 신고, ▲출입 및 통행금지 요구, ▲안전모 미착용 및 다수인원 탑승 신고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5.6.30.)

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자전거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편의 도모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¹²⁾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촉진에 초점을 두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사항은 ‘자전거도로’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음.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나 무단방치에 관한 사항은 ‘자전거도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일반 보도 등 통행이 이루어지는 공간 전반에 걸친 사항으로서 「도로교통법」을 통해 규정하거나, 「자전거법」은 ‘자전거’를 규율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임.

특히 제22대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기도 하였는데, 해당 법률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거치 제한구역과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¹³⁾¹⁴⁾

1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해당 법률안은 2025.12.15.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2025.12.18. 헌법재판소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면허를 요구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제43조 등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뒤 제정안의 내용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면허 소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심사할 예정임.

14) 제22대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법안은 다음의 12건임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10호),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22호),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10호),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92호), 김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제정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350

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95호), 복기왕·권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26호),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71호),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74호), 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83호),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25호),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55호),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14호)